

세율	<p><과세표준> <세율></p> <p>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</p> <p>400만원초과 12만원+400만원</p> <p>1천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분의 10</p> <p>1천만원초과 72만원+1천만원</p> <p>4천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분의 20</p> <p>4천만원초과 672만원+4천만원</p> <p>8천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분의 30</p> <p>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+8천만원</p> <p>초과금액의 100분의 40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세와 같음
납기 및 부과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간예납(조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가: 1월~7월(납기 8.16~8.31) - 2가: 8월~12월(납기 12.16~12.31) •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다음해 1월말까지 • 결정과 징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세기간중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다음해 2월말까지 - 결정세액이 자진납부세액과 다를 경우 부과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존치실익이 없고,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 폐지 • 신고와 자진납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다음해 1월말까지 • 결정과 징수 : 농지세와 같음
특별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조직한 단체(납세조합)가 농지세 특별징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특별징수 제도 폐지
수시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해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경우 •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농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세와 같음
농지의 변동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의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 및 재배시설의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여
소액부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출세액이 2,000원 미만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세와 같음
농지조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금액, 소득금액, 기타 농지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지조사위원회를 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로 변경하여 존치